

일본연구소 운영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본 연구소는 서울신학대학교 부설 일본연구소(Center of Japanese Study) 이하 “본 연구소”라 한다.

제2조 (소재) 본 연구소는 서울신학대학교 내에 둔다.

제3조 (목적) 본 연구소는 일본문화와 예술, 일본문학, 일본기독교문학, 일본선교, 일본어학, 기타 일본 학 관련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일본이해와 일본선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(사업)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.

- ① 일본연구를 위한 국내, 국제 학술대회, 강연, 세미나 개최
- ② 연구재단 및 교회의 연구과제 수행(전국 일본어 예배 전수조사)
- ③ 본 연구소의 정기학술지 간행, 연구자료 수집과 자료집간행
- ④ 해외 일본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
- ⑤ 일본선교훈련원 및 선교코칭과정 운영(한국 일본인유학생 선교전략과 선교유형연구)
- ⑥ 공공기관 및 산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
- ⑦ 일반시민을 위한 일본관련 문화행사 개최
- ⑧ 기타 연구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구성 및 조직

제5조 (구성)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- ① 소장 1인
- ② 운영위원회 약간명
- ③ 상임연구원 약간명
- ④ 객원연구원 약간명
- ⑤ 연구소 조교 약간명

제6조 (임명 및 임기) ① 소장은 전임교원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본 연구소 감사는 소장이 위촉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③ 상임연구원은 일본연구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- ④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임명한다. 연구원의 임기는 목적사업의 기간 동안으로 한다.
- ⑤ 본 연구소 조교는 석사 또는 박사 과정 학생으로 소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목적사업 기간 동안으로 한다.
- ⑥ 소장은 연구소의 외연확장을 위해 약간 명의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7조 (임무)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상임연구원은 목적사업의 수행과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기획, 추진한다.
- ③ 객원연구원은 연구소의 제반연구 활동을 자문하며 전공 관련 사업을 기획, 운영할 수 있다.
- ④ 본 연구소 조교는 연구소의 업무추진을 위한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8조 (설치 및 구성) ① 본 연구소의 운영 전반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내의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 및 상임 연구원, 객원연구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운영위원장은 소장이 겸한다.
- ④ 운영위원 인원은 7명 이하로 한다.

제9조 (업무) 운영위원회는 소장에 의해 소집되며,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제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및 개폐
- ② 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
- ③ 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
- ④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0조 (정족수와 의결방법) 운영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소속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13조 (재원 일반) 본 연구소는 다음의 재원을 기초로 하여 운영된다.

- ① 대학에서 지원되는 연구비 및 연구관리비
- ② 국내외의 단체, 교회, 개인으로부터의 연구지원금
- ③ 교내외의 연구용역비
- ④ 일본선교를 위한 기부금

제14조 (회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 회계연도와 같다.

제15조 (감사) 본 연구소는 연 1회 이상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6조 (승인)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5 장 부 칙

- ① 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칙을 정할 수 있다.
- ② (규약의 개정)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.
- ③ 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연구소의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- ④ (준용)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부설연구소 설치지침」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.
- ⑤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